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사선방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보안,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원자력안보팀을 신설하며, 소속기관 규제 소수직렬의 원활한 충원을 통한 원전규제 강화 및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렬을 확대하는 한편,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업무를 안전정책과로, 운영 지원 업무를 원자력심사과로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기술서기관”을 “기술서기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2호의2 중 “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지원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5.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

제6조제6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

제7조제2항 중 “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”을 “방재환경과, 원자력 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구관”을 “연구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제11호 중 “핵안보, 핵비확산”을 “핵비확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

2.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회의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·검사 및 교육·훈련
4.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
5.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
6.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·검사 및 교육
· 훈련
7. 방사능테러 예방·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·시행
8.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
9. 핵안보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

제4장(제11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2 기상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 다음에 “공업주사·기상주사·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”를 신설하고, “기상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”를 삭제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보팀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원자력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원자력통제과장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2조의2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국제협력담당관,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법제팀을 두되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술서기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----- --.
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--.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22의2. 위원회 회의 운영 <u>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지원</u>	22의2. ----- <u>지원</u>
22의3. ~ 23. (생 략)	22의3. ~ 2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안전정책국) ① ~ ③ (생 략)	제6조(안전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10의4. (생 략)	1. ~ 10의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의5.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</u>

11. (생 략)

⑤ (생 략)

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2. (생 략)

<신 설>

⑦ (생 략)

제7조(방사선방재국) ① (생 략)

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, 생활방사선안전과, 방사성폐기물안전과,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.

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⑦ (생 략)

⑧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0. (생 략)

11. 핵안보,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

의 구성

11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
운영 지원

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방사선방재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방재환경과,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 -----.

③ -----
----- 연구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핵비확산 -----

이행	--
12. · 13. (생략)	12. · 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</u>	<u><삭제></u>
15. <u>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</u>	<u><삭제></u>
16. <u>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 · 검사 및 교육 · 훈련</u>	<u><삭제></u>
17. <u>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</u>	<u><삭제></u>
18. <u>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</u>	<u><삭제></u>
19. <u>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 · 검사 및 교육 · 훈련</u>	<u><삭제></u>
20. <u>방사능테러 예방 · 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 · 시행</u>	<u><삭제></u>
21. <u>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</u>	<u><삭제></u>
<u><신설></u>	⑨ <u>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
	1. <u>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</u>

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제11조(평가대상 조직)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
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

- 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
- 2.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
협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
사항
- 3.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
리적방호 심사·검사 및 교육
·훈련
- 4.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
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
- 5.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
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
체제 구축
- 6.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
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·검
사 및 교육·훈련
- 7. 방사능테러 예방·대응에 대
한 대책 수립·시행
- 8.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
수립 및 시행
- 9. 핵안보에 관한 조약 및 협정
등의 이행

<삭 제>

<삭 제>

<u>같다.</u>	
------------	--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9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<u>기상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</u>	· · <u>4</u>	· · <u><삭 제></u>	-4
<u>공업주사·기상주사·시설주사</u> <u>또는 방재안전주사</u>	<u><신 설></u>	<u>4</u>	+4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	
연 락 처	(02) 397 - 7248